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자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1. 2. 25.(목)) -

- (개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유의사항) '20년 40개 → '21년 45개, (절세 Tip) '20년 25개 → '21년 30개
 -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중요도 상위 3개 제공, (홈택스) 법인별 분석자료 전체 제공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①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리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②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③ (조기환급)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 후 검증)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올해는 지난해 보다 도움자료가 확대되고 편의성이 향상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3.1.(월) 개통하였으니 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신고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도움자료에 대한 안내 동영상 및 상세 설명 자료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안내)**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가 직접 안내되었으니 관련 내용 문의 시 성실신고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 (모바일) 중요도 상위 3개 제공, (홈택스) 법인별 분석자료 전체 제공
3. **(조기 전자신고)** 3월 마지막 주에 파일변환, 파일전송이 집중될 경우 전산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파일 변환, 변환결과 조회를 가급적 3.23.(화)까지 완료하고 조기에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기검증 검토서식 제출)** 금년에는 18종의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pdf파일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하는 경우 파일명을 검토 서식명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명 지정 요령 : 검토서1.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pdf
 -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5. **(설문조사 참여)** 보다 나은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 및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3.1.~3.31. 기간 중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홈택스 설문조사 접근경로(3가지 방법)
 - ① 「홈택스」 홈화면 → 고객센터 → 설문참여
 - ②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화면 ⇨ 설문참여 바로가기(링크)
 - ③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하단 ⇨ 설문참여 바로가기(링크)
6. **(결산 부속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서류는 신고기한(3.31) 종료 후 10일 이내(4.12.까지)에 pdf파일로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법인세 신고 관련 보도자료,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 수입등록 개요

□ **세무대리 수입등록**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수입납세자를 등록하고 납세자(세무대리 의뢰인)가 이를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

□ **수입등록 절차**

- **(세무대리인)** 홈택스의 수입납세자 등록화면에서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수입납세자 등록·신청
 -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납세자-세무대리 의뢰인)**
 - ①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 화면에서 위임내용에 동의*하거나
 -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휴대폰·신용카드 인증 필요
 - ** 납세자(세무대리 의뢰인)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에서 자신이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해임가능
 - ② 세무서를 내방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 제출

□ **수입등록 종류**

- **(세무대리)** 세무대리 의뢰인의 고지·체납 등 수입납세자 정보 조회 업무 및 증명발급, 휴폐업신고, 전자고지 신청 등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서비스 이용가능
- **(신고대리/외부조정)** 신고를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회 등 신고대리 서비스 및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가능
 - * 신고대리의 경우 납세자의 일반정보 조회만 가능, 증명발급과 각종 신청업무는 처리 불가

세무대리 수임등록 업무별 절차

①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 세무대리/납세관리 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첫 화면에서 가장 대리/신고대리(외부조정) 구분에 따라 '등록' 버튼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HomeTax logo and various service categories: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and 세무대리/납세관리 (highlighted in red). Below the navigation bar, the main heading is '세무대리/납세관리'. A sub-heading reads: '세무대리/납세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 민원증명 신청 등의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To the right, there is a button for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hree columns: '기장대리' (Tax Agent), '세무대리인 공동' (Joint Tax Agent), and '신고대리' (Tax Reporting). Each column has a '등록' (Registration) button highlighted in red. Below each column, there are lists of services with arrows pointing to the right.

② 세무대리 의뢰인의 등록사항 입력

- ①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요청한 정보제공 범위(타소득 포함, 해당사업장)를 정확히 입력
- ② 개인사업자는 타소득포함과 해당사업장 중 선택
 - 다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타소득포함은 한번만 선택되므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 “수임납세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로 검색 > 상세보기” 버튼 클릭하여 타사업장에 이미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등록 여부 확인
 - * 다른 세무대리인이 ‘타소득포함’으로 수임한 경우 이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무서로 문의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록을 선택

수입납세자등록 핸드폰번호, 메일주소는 세무대리의뢰인의 전자안내, 증명발급안내 등에 활용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S-85547

세무대리의뢰인

- 유형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
 - 개업일자: []-[]-[]
 - 상호: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선택 []-[]-[]
- 국세정보수신동의: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전자우편주소: []@[]-[]-[]
- 직접입력: []
- 국세정보수신동의: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기장수입내역
수입일자: []-[]-[]

세무대리의뢰인의 정보 및 관련서비스 제공

정보제공범위: 타소득포함 해당사업장

정보제공범위

- '타소득포함': 세무대리의뢰인의 주민등록상의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 '해당사업장': 등록된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소득
- '타소득포함'으로의 수입등록은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와 관계없이 한 납세자에 대하여 한 건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입력가능하며, 여권번호는 대소문자 구분하고 왼쪽부터 입력하세요.
- 여권번호 입력시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국세청에 미등록된 여권번호이니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후 수입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

③ 세무대리 의뢰인(납세자)의 동의

- ①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탭을 선택하면 나오는 세무대리정보 메뉴에서 위임구분에 따라 '수임동의' 클릭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신고/납부 | 상담/제보

조회/발급 | 신청제출안내

조회/발급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된 내용의 조회는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신고본의 전산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 납부된 내용의 조회는 최근 5년 이내의 납부 내용으로 은행 납부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주택 등 기증시각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XML원본보기

- 발급
- 목록조회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사용자유형별 조회권한 관리
-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
- 발급보류/예정목록조회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 수신전용메일 신청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 바로가기

세금 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 종합소득세신고안내정보조회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 나의신고대리수임동의
- 나의세무대리인 목록
- 발급된 증명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 신고대리 정보이력 조회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활용쇼핑물 안내
- 과세유형전환

② 세무대리정보 중 나의 세무대리 수입 동의를 선택하고 정보 제공 범위 및 동의여부에서 '동의'를 선택

나의세무대리인 수입동의 수입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이 조회됩니다.

나의세무대리인 수입동의

나의납세자번호	나의개업일자	나의상호명	세무대리인사업자번호	세무대리인상호	세무대리인 전화번호	수입일자	정보제공범위	동의여부
101-	2020-	태.	314-	산		2020-	해당 사업장	동의 <input type="checkbox"/>

③ 선택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팝업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며, 팝업창의 '확인'을 누르면 수입동의를 처리됨(취소는 거부)

나의세무대리인 수입동의 수입등록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이 조회됩니다.

나의세무대리인 수입동의

나의납세자번호	나의개업일자	나의상호명	세무대리인사업자번호	세무대리인상호	세무대리인 전화번호	수입일자	정보제공범위	동의여부
210-	2020-		120-	세무회계...	02-	2015-02-	해당 사업장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총 1건 (1/1)

확인

팝업 메시지

정보제공 동의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④ 공동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동의 방법

- (세무서 방문) 공동인증서가 없는 납세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세무대리 정보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

- ①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 등
 - ②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